

코로나-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감면 검토

《 부 과 과 》

□ 감면근거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§4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공익목적 또는 지역개발 지원 등: 조례로 정하여야 함
-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과 같은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: 지방의회 의결

※입법절차에 기간이 소요되는 조례보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임

▪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사례

- (평택시, 안성시) 메르스 확진·격리자 및 병의원에 대한 자동차세, 재산세, 주민세 등 '15년 198백만원 감면
- (안산시)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세, 재산세, 주민세 등 '14년 693건 62백만원, '15년 974건 88백만원 감면
- (강원도) '19년 강원도 강릉 일대 산불피해자에 대한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2,119건 1,205백만원 감면
- (천안시) '1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 또는 건축물 20동, 농경지 1,893필지 소유자의 재산세 73백만원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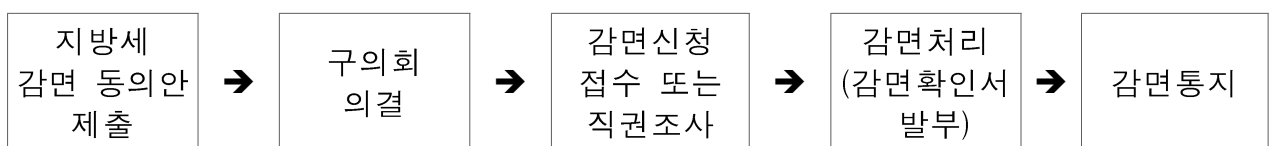
□ 감면내용

○(감면세목) 구세인 재산세, 등록면허세(면허), 등록면허세(등록)

* 재산세:7,9월, 등록면허세(면허):1월 및 필요시, 등록면허세(등록):필요시

○(감 면 율) 일부 경감 ~ 전액 감면 가능

□ 감면절차



작성 자 부과과장 :이 승 재 ☎2670-4210 팀장 :권 영 택 ☎ 3250 담당 :김 은 주 ☎ 3251